

공 고 제 호

「주민등록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
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(확인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기간까지 확인(신고)을 하지 않을 경우
에는 아래의 새로운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(문의전화: 담당자:)

○ 지참물: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

년 일 일

음 · 면 · 동장 인

[illegible]210mm × 297mm [보존용지](2종) 60g/m²]